

#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IP기반 창업촉진을 위한 2024년도 IP(지식재산) 디딤돌 프로그램 지원대상 모집공고

서울경제진흥원(서울지식재산센터)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IP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서울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「2024년 IP(지식재산) 디딤돌 프로그램」 지원 대상을 모집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명: 2024년도 IP(지식재산)디딤돌 프로그램
- 접수기간: 2024. 3. 28.(목) ~ **예산 소진 시까지**
- 지원대상: 서울시민으로서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
  - ※ 기술기반 창업이란 특허등록이 가능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는 경우를 의미함
- 지원요건 : **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\*(증빙서류 제출 필수)로서 2024년도 창업을 진행할 예정인 서울시민\*\***

\* 아래의 경우 기창업자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

- ① 당해연도 1.1. 이후 창업자(사업자등록증 기준)
- ② 폐업 후 업종을 추가/변경하여 재창업 예정인 자 (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)
- ③ 부동산 임대업 영위기업 대표(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는 가능하며, 사업자 등록증 상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)

\*\* 아래의 경우 타지역민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

- ① 서울지식재산센터 IP창업준 교육 수료생(담당자 확인 필수)
- ② 서울시 소재 학교 재학생(재학증명서 제출 필요)
- ③ 타기관 창업지원사업 선정자(지자체·유관기관의 융자 및 R&D 지원 등)로서 서울시에서 창업 예정인 자(단, **명확한 근거자료 제출 필요**)
- ④ 당해연도 1.1이후 기창업자로서 서울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(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서울시 소재인 자)

※ 공동출원인은 '개인'으로만 구성 가능, 기업·단체 등 불가

※ 사업신청자는 증빙자료 필수 제출(예비창업자, 예외적 지원 신청자)

※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→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관련 신청/신고 →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→ (예비창업)사업자등록사실여부/(폐업 후 재창업)총사업자등록내역 중 택1

※ 사실증명 제출시 **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비공개 처리(서울시주소 확인 필요)**

※ 사업자등록사실여부의 경우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첫 번째 선택(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)

## □ 지원 내용

### ○ 지원사업별 지원내용

구분	지원내용	대상 및 신청서류
아이디어 기초상담 (지식재산 전문컨설팅)	- 서울지식재산센터 변리사를 통한 아이디어 권리화 가능성 상담 - 2024년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상담	- 지원대상: 서울시민 예비창업자  - 신청서류(2): 디딤돌신청서+ 사실증명서
아이디어 고도화 및 권리화 (특허출원)	-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출원 지원 - 대리인 수수료는 160만원 이내로 하되, 20%(32만원 이내)는 수혜자 현금 부담 - IP창업존(IP창업스쿨) 교육(32시간)을 수료한 경우 자기부담금은 특허출원 후 환급가능 - 출원료, 심사청구료 등은 수혜자 부담	

※ IP창업존(IP창업스쿨) 교육은 별도 공지 및 접수 예정([www.ipseoul.kr](http://www.ipseoul.kr) 홈페이지)

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### ○ 신청방법

- 온라인 접수([www.ipseoul.kr](http://www.ipseoul.kr)) → 온라인접수 → IP디딤돌 프로그램)

### ○ 제출서류: 전체 2개 파일

#### 1) 신청서 한글파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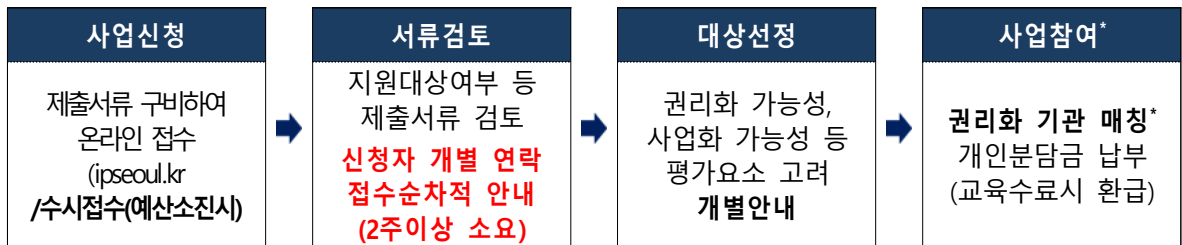
- IP(지식재산) 디딤돌프로그램 신청서 일체(개인정보동의서, 신청서)\_ HWP 1개 파일

#### 2) 사실증명서 pdf파일

- 사실증명(홈택스-사실확인 후 발급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/총사업자등록내역) \_ PDF 1개

※ 국세청 홈택스([hometax.go.kr](http://hometax.go.kr)) →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관련 신청/신고 →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→ (예비창업)사업자등록사실여부/(폐업 후 재창업)총사업자등록내역 중 택1

### ○ 지원절차



\* 권리화 협력기관(특허사무소) 모집일정에 따라 매칭 5월 이후 진행 예정

○ 23년 이전 IP디딤돌프로그램 수혜자는 24년 IP디딤돌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불가

### ○ 문의처

- 서울지식재산센터 조영임 선임 02-2222-3868([yijo20@sba.seoul.kr](mailto:yijo20@sba.seoul.kr))

## □ 2024년 IP(지식재산) 디딤돌 프로그램 자주묻는 질문

### 1. IP(지식재산) 디딤돌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이 따로 있나요?

→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IP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서울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, 권리화 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서울에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. 단, 다음과 같은 예외에 해당하실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구 분	내 용
사업자등록 예외	① 당해연도 1.1. 이후 창업자(사업자등록증 기준) ② 폐업 후 업종을 추가/변경하여 재창업 예정인 자(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) ③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 *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가능하며, 사업자 등록증 상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
서울시민 예외	① 서울지식재산센터의 IP창업존 수료생 ② 서울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③ 타기관 창업지원사업 선정자(지자체·유관기관의 용자 및 R&D 지원 등)로서 서울시에서 창업 예정인 자(단, 명확한 근거자료 제출) ④ 서울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당해연도 기창업자(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서울인 자)

### 2. IP(지식재산) 디딤돌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전부 지원을 해주나요?

→ 지원대상은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됩니다. 제출한 아이디어가 특허의 대상이 아니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지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 또한, IP 디딤돌 프로그램은 예비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4년도에 창업계획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

### 3. 개인 부담금이 있나요?

→ 본 프로그램의 전체 지원액은 약 160만원이며, 그 중 20%인 32만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 다만, 32시간의 IP창업존 교육을 수료하시면 개인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. IP창업존 교육은 별도로 모집공고 및 접수 진행되며, 서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(ipseoul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최초 상담이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 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시고 교육 수료 이후에 환급 받을 수 있으며, 환급 시점은 11월 경입니다.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(출원료, 심사청구료, 송달료 등)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
### 4.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협력기관을 선택할 수 있나요?

→ 협력기관은 선택이 불가합니다. 특허출원을 진행할 협력기관은 서울지식재산센터가 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. 디딤돌 권리화 수혜자는 선정된 협력기관과 권리화 과정을 진행합니다.

### 5. 아이디어만 있으면 특허출원을 진행해 주시나요?

→ IP디딤돌 프로그램은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시는 분이 원만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리화(특허출원)와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본 프로그램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을 예정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, 본 프로그램을 지원

받고자 하는 경우 창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아이디어에 대한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 첨부된 양식지의 아이디어 설명 부분과 사업 계획 부분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셔야 IP디딤돌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합니다.

#### 6. IP(지식재산) 디딤돌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?

→ IP디딤돌 프로그램 신청서(아이디어 부분 및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), 사실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사실증명서는 발급 대상 서류와 발급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) 발급경로: **국세청홈텍스**→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관련 신청/신고 →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

2) 발급서류

2-1) 사업자등록을 한번도 한 적 없는 경우: **'사업자등록사실여부'**

※ 사업자등록사실여부의 경우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첫 번째 선택(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 **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**)

2-2)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: **'총사업자등록내역'**

※ 사실증명 제출시 **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비공개 처리(서울시주소 확인 필요)**